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1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홍숙의	640729-*****	경기도 안양시
하옥수	600129-*****	경상북도 포항시
김란	690513-*****	전라남도 보성군
박경자	640904-*****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재민	820220-*****	경기도 남양주시
김해룡	76021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운학	760506-*****	전라남도 무안군
박현덕	890328-*****	경기도 부천시

###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 3. 서류의 내용 :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프로베스트 재무법인 보험대리점	<p>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주)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오재석)은 2020.1.8. ~ 2020.12.31. 기간 중 □□□□□□보험(주)의 ‘○○○○○○○○’ 등 32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p>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오재석	<p>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주)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오재석)은 2020.1.8. ~ 2020.12.31. 기간 중 □□□□□□보험(주)의 ‘○○○○○○○○’ 등 32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p>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임원 직무정지 3월
홍숙의	<p>1.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7.9.7.~ 2017.11.10. 기간 중 □□□□□□보험(주)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p>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p>2.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3.1.9.~2015.9.10. 기간 중 □□□□□□보험(주)의 ‘○○○○○○○○○○○○○○’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p> <p>3.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가. (주)■■■■■■■■■■ (舊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3.7.31. ~2015.9.10. 기간 중 □□□□□□보험(주) ‘○○○○○○○○○○○○’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p>		
하옥수	<p>「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옥수는 2016.8.4.~2017.8.2. 기간 중 □□□□□□보험(주) ‘○○○○○○○○○○○○○○’ 등 총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p>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7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란	<p>「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란은 2021.2.23.에 모집한 □□□□보험(주)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p>	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p>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p>
박경자	<p>「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p> <p>(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경자는 2018.4.20.에 모집한 □□□□□□보험(주) ‘○○○○○○○○○○○○○○○○’ 등 총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음</p>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p>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p>
김재민	<p>2018.6.7.~2019.1.25.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8.6.10.~2019.2.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p>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p>보험설계사 등록취소</p>
김해룡	<p>2016.3.22.~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윤OO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윤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p>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p>보험설계사 등록취소</p>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고운학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박현덕	2018.1.30.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8.2.1.~2018.2.8. 기간 중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4.11.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는 신계약에 한함

####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2. 24.(금)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충정 박범준 변호사

####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